

「구제역」 국내 유입방지 대책

김 정 훈 서기관
(농림부 축산위생과)

1. 머릿말

'97. 3. 20일 대만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하여 대만에서 사육하는 돼지 1,100만 두중 400만두가 죽거나 살처분되어 이에 따른 양돈산업의 직접 손실액은 약 2조4천억원에 이르렀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북부지역에서도 「구제역」이 발생되어 북한지역에까지 유입되었다는 소문이 있어 정부당국은 물론 양축농가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제역」이란 무엇이고, 여지껏 정부에서 조치한 내용과 양축농가가 협조할 사항등에 대하여 본지를 통하여 소개드리고자 하니 「구제역」국내유입방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제역」개요

1) 정의 및 특징

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의 입, 발굽 등에 물질과 염증이 생기며, 치료가 불가능한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가축전염병중 전파력이 가장 빠르고, 발생시는 근절이 어려워 양축농가와 관련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시키고, 국제교역상 가장 중요한 규제대상 전염병으로 「구제역」 발생시는 소, 돼지, 양 등 해당가축과 그 생산물 수출을 중단시켜야 함.

2) 세계의 발생상황

- 비발생국가 : 한국, 일본,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44개 국가
- 발생국가 :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일부 국가

3) 유입경로

- 「구제역」 발생지역산 동물이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제품
- 「구제역」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료, 물, 원피 등
- 항공기 또는 선박내의 발생지역산 축산물 음식찌꺼기
- 공기를 통하여도 전염되며, 사람의 옷이나 신발 등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음

4) 임상증상

- 잠복기 : 24시간에서 14일 정도
- 증상
 - 일반증상 : 40°C 이상의 발열, 식욕부진, 유량 감소, 침흘림
 - 구강증상 : 혀, 입술 등에 수포형성
 - 체부증상 : 파행, 발굽사이에 수포형성
 - 유방증상 : 유두주위에 수포형성
- ※ 수포(물질)부위가 터지면 세균감염으로 화농 및 궤양이 생김

3. 세계의 「구제역」발생 사례

1) 일반사항

〈표1〉 「구제역」발생년도, 원인 및 경제적 손실 추정액

국 별	최종발생년도	발생원인(추정)	직접손실액(추정)
미 국	1929	외국선박에서 유출된 잔반	-
카나다	1952	독일농부가 반입한 소시지 또는 작업복	-
영 국	1967	아르헨티나 이민자가 반입한 양고기 뼈	549억원
멕시코	1948	-	1,350억원
덴마크	1982	-	610억원
대 만	1996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한 축산물	2조4천억원

□방역대책반 구성(중앙, 시 도)

○중앙대책반(12명)

- 축산위생과장(반장), 축산국 4과 주무사무관, 축산위생과 2명, 동물검역소 1명, 수의과학연구소 1명, 생산자단체 및 협회 3명 시 도 대책반(10명)

- 담당과장(반장), 담당과 3명, 가축위생시험소 3명, 시도지회 생산자

단체 및 협회 3명

□방역지대 설치(시도)

○오염지역

-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

○경계지역

-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20Km 지역

○긴급방역조치사항

- 농장내 소독 실시(규정소독약 사용)

- 출입금지 표지판(규정서식) 및 오염물품(사료 비품 등) 폐기처분

- 동거가축 및 감수성동물 살처분 등 실시

□시료채취, 병성감정, 진단 : 수의과학연구소

○구제역 유상증상 발견시 병성감정 등은 수

4. 대만 「구제역」발생시 농림부가 취한 대책

1) 추진개요

「구제역」의 국내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구제역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공·항만 검역강화, 유관기관(관세청, 해양경찰청 등)과 항구적인 「구제역」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2) 일자별 주요 추진내용〈표2〉

5. 「구제역」국내발생시 단계별 긴급조치 대책

〈표2〉 대만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농림부 일자별 주요 추진내용

일 시	제 목	주 요 내 용
'97. 3.20	대만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 금지 조치	○대만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금지 조치(주한 대만 대표부장, 외무부장관, 국립동물검역소장, 수의과학연구소장, 축협중앙회, 축산물유통사업단, 한국육류수출입협회)
3.22	대만산 수입돼지고기 반송	○국내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통관여부와 관계없이 '97. 2. 17이후 도축된 대만산 돼지고기 반송지시 및 협조요청(수입업체, 국립동물검역소장, 관세청장, 주한대만대표부장, 외무부장관)
3.25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밀수입 방지 협조요청	○국내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경로(밀수 등)를 통한 불법반입 단속강화 협조 및 검역철저 지시(관세청, 해양경찰청, 동물검역소 등)
3.28	대만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계획 보고(장관)	○수출입검역 강화 ○검역유관기관 공동협조체제 구축 ○국내 가축방역 강화등

일 시	제 목	주 요 내 용
4. 1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밀수입 등 방지 협조요청	○대만의 구제역 발생원인은 중국 또는 동남아로부터 밀수입으로 추정하 고 있어 등 물품 불법반입 단속강화 협조요청 - 관세청, 해운항만청 등
4. 3	대만산 가축사료 및 여행객 검역 철 저 지시	○대만산 건조, 깔짚, 볏짚 등에 대한 소독 실시
4.16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밀수입 방지 요청	○해안경계시 해상을 통한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밀수입 감시 및 적발 협조요청
4.19	대만의 구제역발생에 따른 특별방역 대책국무회의의 보고(4. 22)	○구제역(FMD) 개요 ○대만의 "구제역" 발생 상황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항구적인 구제역 방역체계로 전환)
5. 1	대만의 구제역발생에 따른 특별방역 대책 차관회의의 보고	- 공·항만의 검역강화 - 구제역 발생을 가상한 방역 CPX 실시 - 정기적으로 관련부처 합동 대책 회의
4.21 ~5.2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실태 조사	○서·남해안의 항만주재 유관기관 협조실태, 동물검역 홍보물 부착 및 홍보사항 숙지, 동남아지역 입·출항 선박 및 횡수 선적물품 조사 외항선의 잔반처리 실태등 조사
5. 9	구제역특별방역대책 추진 협조요청	○5.1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제2조정관주재 구제역 특별방역추진 관련 부처, 적극 협조요청 및 구제역특별방역 세부 실시요령 통보(관세청, 외무부등)
5. 9	구제역 관련 합동담화문 발표	○구제역 특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제역 예방을 위해 양축능가가 지켜야 할 사항 등(계경원장관, 내무부장관,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 관, 계제기간 : 5~7월)
5.15	구제역 관련 홍보협조	○공보처에 홍보내용과 TV자막 방영문안을 국영방송에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요청
7. 2	구제역방역대책 추진 관련부처 협의회	○우리부에서 6. 25(수) 개최한 구제역방역대책 추진협의회 결과보고 및 통보내용 적극 협조요청
7.11	가축방역진진대회 개최	○축산농가, 공동방역사업단, 일선방역행정기관의 가축질병방역체계를 점 검하고 방역의 중요성 인식 제고
7.18	대만구제역 발생관련 현지조사 결과보고 (통보)	○대만 현지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구제역 유입 방지대책 적극 협조요청
7.28 ~7.30	구제역 모의방역훈련(CPX) 실시	○구제역발생을 가상하여 초기단계부터 현장 위주의 방역도상훈련 실시 - 구제역의심가축 신고, 현지조사, 병성감정, 긴급방역조치, 방역 관련기 관 업무협조실태 점검 등
8.26 ~9.6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관련부처 협조 실태 합동조사(농림부, 관세청, 해양경찰청)	○공·항만 검역강화 밀수입 단속, 음식물 찌꺼기 안전처리 실태 부처별 소관사항 추진 ○구제역 유입방지 관련 홍보등
10. 6	구제역특별방역대책 관련부처 협조 실태 합동조사 결과보고 및 통보	○구제역특별방역대책 세부실시요령 및 해양 경찰청의 정책보고(6. 25)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한 재강조 등 협조요청
12.11	대만구제역 재발생에 따른 검역강화	○대만 구제역 재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밀수입 단속 등 협조요청
12.26	구제역 유입방지원 관련 부처 협의회	○12월 대만에 구제역 재발생 사실을 상기하여 동절기 구제역 유입방지 대책 적극 협조요청
'98. 2. 9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협조	○긴급 피난어선 정박지역 방역조치 ○음식물찌꺼기(잔반)는 안전처리후 가축사료로 제공

〈표3〉 구제역으로 인한 긴급사태 발생시 역할분담

구 분	임 무
농 립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에 협조요청 - 구제역 발생지역 차량, 인원 등 통제협조 ○ 시도, 동검, 수과연 등에 방역조치 지시 - 방역지대설치 - 수출검역증단 및 병성감정반 현지출동 - 살처분보상금 예산확보('98예산:3,578백만원) ○ 국제수역사무국(OIE), 주한외국대사관 등에 구제역 발생사실 통보 ○ 구제역백신 접종지역 선정(30만두분 비축) -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외곽지역부터 접종
시 ·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발생 사실보고 - 농장주(진료수의사 포함) → 시 · 도 → 농림부 ○ 방역대 설치 - 오염지역, 경계지역 선정 ※ 발생농장 출입통제 ○ 경찰청, 군부대 등에 출입통제 협조요청 ○ 기동방역반 운영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시군요원 등으로 편성운영
동 물 검 역 소 수의과학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제류동물 및 축산물 수출검역 중지 ○ 병성감정반 현지 투입 - 병성감정 결과보고(농림부) 및 관련 기관 통보(시도, 동검 등) ○ 전국 양축농가 혈청조사 실시 ○ 가축이동 경로 등에 대하여 추적조사 실시 ○ 농림부 지시에 따라 구제역백신 배정

과연에서 전담

- 시료채취, 부검, 병성감정 등 수과연 전문가 긴급조치

□ 구제역 백신사용 통제

- 구제역 백신접종은 반드시 중앙대책반 지시에 따라 접종

□ 방역지대 조치사항(시·도)

〈오염지역〉: 반경 10 Km

- 소, 돼지 등 감수성동물 이동금지 및 살처분
- 도축장, 가축시장 폐쇄 및 인공수정 금지
- 농장출입통제(차량, 인원, 용구, 사료, 분뇨 등) 및 이용물 소각

〈경계지역〉: 반경 20 Km

- 소, 돼지 등 감수성동물 이동금지
- 가축시장 등 출입통제 및 소독실시
- 농장출입 통제(차량, 인원, 분뇨 등) 및 소독

실시

□ 소요예산 조치(농림부)

- 살처분보상금 지급('98 예산: 3,578백만원)

- 발생지역에 따라 소요액 지급

○ 부족금액은 촉발기금, 재해보상비 등 사용추진

- 백신추가 구입비용 15,000백만원(10백만두×1,500원)

- 소독, 매몰, 교통통제 소요비 등

2) 긴급 사태시 역할분담 〈표3〉

6. 맺음말

「구제역」의 국내유입방지를 위하여 농림부는 관련부처 등과 수 차에 걸쳐 협의회

를 개최하였고, 농림부 요청사항을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음.

만약의 경우 가축(소, 돼지, 사슴, 산양 등)을 사육하는 양축농가나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은 「구제역」 유사증상(입, 발굽, 유방 등에 물집이 생기는 증상)을 발견한 때는 즉시 인근 가축위생시험소 또는 수의과학연구소에 직접 신고하여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행정기관은 대책반을 자동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진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농장에 대하여 출입인, 차량 등을 철저히 통제하는 물론 필요시 관할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중앙방역대책반과 긴밀히 연락하여 오염지역 및 경계지역 설정 등 단계별 방역대책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養豚**